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22 발의연월일: 2021. 10. 12.

발 의 자:홍정민·강훈식·고민정

김수흥 · 김승원 · 김정호

김진표 • 민형배 • 박홍근

송갑석·신정훈·윤준병

아수진비 · 이용우 · 이탄희

정필모 • 최기상 • 한준호

허 영 의원(19인)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현행법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승인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변하고자 하는 필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업전환의 범위에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
-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신설).
- 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안 제2 2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 마.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

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의4 신설).

사.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을 "변화에 대응하는"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를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 등을 지원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제5조에 따른 사업전환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분야(이하 "신사업 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중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로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신사업 분야의 범위
- 2.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 3.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 4.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 무워단에 속하는 공무워
-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업종"을 "업종(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

-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에 한 정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자가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심사를 위해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를 "승인기업(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신사업 분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 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 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9조의4(행정규제의 개선 요청) 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행정규제의 확인 및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한 중소기업자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5(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전환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업전환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전환계획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제1조(목적)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변화에 대응하는-----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강화 및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등을 지원하고-----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제5조에 따른 사업전환심 의위원회가 정하는 분야 (이하 "신사업 분야"라 한 다)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 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u>경제환</u> 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 지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

1. ~ 5. (생 략) <신 설>

	여 사	#로운	제공병	<u> </u>	도
	입하	는 경약	우로서	대통령	<u> 령</u>
	으로	정하는	는 기준	들에 ㅎ	H 당
	하는	경우			
제3조(적용병	범위)		<u></u> 경제	ll환
경의	변화	에 대	응하여	경쟁력	<u>력을</u>
확보	하기	위하여			
제4조((중소)	기업사	업전환	촉진계	회획
의 =	수립· <i>/</i>	시행) (<u>1</u>)		
	-	혀 했고	- 같음))	
			분야로의		d 전

6. (생 략) ②・③ (생 략) <u><신 설></u> 환 지원에 관한 사항

- 6.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 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 1. 신사업 분야의 범위
- 2.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 3.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선도기업의 선정
- 4.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 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 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저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생략)
-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u>업종</u>

<신 설>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두	그원	

-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 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8조	(사)	업:	전혼	ŀ계	획.	의	승	인)	1	-

- 1. (현행과 같음)
- 2의2.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

3.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스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 획(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 는 사업전환에 한정한다)

- 3. ~ 7. (현행과 같음)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 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 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 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자가 제출한 사업 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심 사를 위해 사업전환계획심사위 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 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

 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 인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 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 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 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① -------승인기업(제8조 또는 제8조의 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신사업 분야 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자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 관련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

<신 설>

<신 설>

보·판매 지원

-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 는 참가 지원
-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 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 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 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 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9조의4(행정규제의 개선 요청)
 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요 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 에게 해당 행정규제의 확인 및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규제의 개선 가능여부를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한 중소기업자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신 설>

 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

 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